

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: 경상북도 기획조정실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4년 4월 12일, 경상북도지사

나. 회부일자: 2024년 4월 1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

- 2024년 4월 24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: 정책기획관 유정근

나. 제안이유

○ 지방세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

다. 주요내용

- 상위법(지방세기본법) 개정사항 반영(안 제5조 및 안 제6조)
 -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인상에 따른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상향(30만원→45만원),
 -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(25명→35명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영두)

가. 조례 개정의 필요성

- 본 개정조례안은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과 관련한 서류송달의 기준과 방법을 완화하고, “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”위원의 정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 증진과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임.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5조(서류송달의 방법) 제1항은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 방법과 관련하여 일반우편 방법의 송달 기준을 현행 1매당 세액이 “30만원 미만”인 것을 “45만원 미만”으로 상향조정함.
- 현행 서류송달의 방법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0조제1항에서 “조례”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, “30만원”의 책정

근거는 같은 법 제55조(납부지연가산세) 제4항1)을 근거로 하여 결정한 것임.

- 그러나 물가·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소액 체납세액 기준을 현행 “30만원 미만”에서 “45만원 미만”으로 개정하는 「지방세기본법」이 '24년 1월부터 시행되었고,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토록 각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음.
- 한편, 납세자의 입장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부재시는 반송되는 등기우편 송달방식보다는 일반우편 송달방법이 더 편리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으로, 일반우편 송달 방식은 납세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안 제6조는 현행 조문을 제1항으로 하고, 제2항을 신설하여 “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” 위원인 정수를 현행 “25명”에서 “35명”으로 확대하는 내용임.

- 도 단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정수는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83조제1항에 따라 “25명 이내”로 구성하고 조례로 “10명”의 범위에서 증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2024년부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건축물 시가표준

1)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액 심의 업무 등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 대상으로
추가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정확한 심의·의결을 위한 전문가
가 필요하므로 위원 정수를 확대코자 하는 것임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등기우편의 반송률 등이 높은 행정현장의 어
려움과 납세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
달방법을 개선코자 송달 기준금액을 완화하고
- 지방세 심의·의결 대상 증가에 따른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
기 위해 위원의 정수를 증원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
이 인정된다고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: 생략

6. 토론 요지: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: 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